수출용 소방용품의 합격표시(제3조 관련)

표시의 양식	표시의 작도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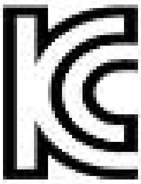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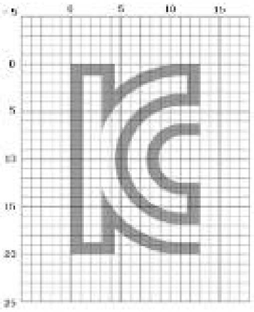

비고

1. 표시의 크기 및 기타 표시방법은 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2. 합격표시가 증지류의 경우 표시는 청색으로 한다.
3. 제조자는 합격표시 부근에 수출용임을 명기하여야 한다.